

한국지반공학회 제20대 회장 선출절차 공고문

한국지반공학회 정관 제4장(임원) 제12조(임원의 선출), 한국지반공학회 운영규칙 제5장(회장선출) 제43조에 의거 2023년 1월 17일(화)을 선거개시일로 예정하고 차기 회장 선출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제5장 회장 선출

제44조(공고) ① 회장선거 공고는 선거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소 45일 전에 학회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하며, 선거 일정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.

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무국으로 하여금 ①항의 공고 이전에 선거절차 등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게 할 수 있다.

제45조(후보자 등록) 후보자는 정회원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한 회원 중에 본 회의 임원 또는 감사를 역임한 정회원으로서, 선거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.

- ①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서 1부
- ② 후보자의 약력 1부
- ③ 후보자의 소견 1부

제46조(후보자 등록 공고) ① 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결과와 함께 후보자별 약력과 소견을 선거개시일 14일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고한다.

② 선관위는 회장 입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1항과 같이 공고한다.

제47조(선거권자의 자격) 선거권은 회장 선거개시일 30일 전을 기준으로 회원가입 후 만 5년이 경과하고 모든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부여한다.

제48조(선거인 명부작성) ① 선관위는 선관위의 일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7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착오, 누락, 변경사항이 인지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해야 한다.

제51조(선출방법)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온라인투표와 직접투표의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② 후보자가 1인 경우에는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으로 선출한다.

운영 규칙 제44조(공고)에 근거하여 선거 개시일 45일 전에 회장선거를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.

2022. 12. 1.

(사) 한국지반공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충기

